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7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 박홍근 · 오기형 · 김영호

김회재 · 전혜숙 · 기동민

양정숙 · 천준호 · 백혜련

홍익표 · 남인순 · 장경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도시철도운영자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 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감면으로 인 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어느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지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운임 감 면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 담이 가중되고 있음.

한편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임.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7항 신 설).
- 나. 공익서비스를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로 정의하고,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2조제10호 및 제31조의2 신설).
- 다.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(안 제31조의3 신설).
- 라.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·개정하려는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(안 제31조의4 신설).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"공익서비스"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.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 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 한다)은 국가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이하 "원인제공자"라 한다)가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

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

- 2.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
-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.
-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, 정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의3(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등) ① 원인제공 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(이하 "보상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
 - 2.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
 - 3.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·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
 -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

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 청에 따라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1조의4(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·개정 시 사전 협의)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"공익서비스"란 도시철도운
	<u>영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 등</u>
	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
	는 등 영리목적의 영업활동
	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
	<u>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</u>
	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
	<u>다.</u>
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⑥	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
	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
	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
	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
	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
	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공익서비스비용의 부
	담)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
	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
	용(이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

한다)은 국가 등 해당 공익서 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이하 "원인제공자"라 한다)가 부담하 여야 한다.

-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 의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 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 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 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 우 그 감면액
- 2.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 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
-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 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.
-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, 정 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의3(공익서비스 제공에 따 른 보상계약의 체결 등) ① 원 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

<신 설>

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(이하 "보상계약"이라 한 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
- 2.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 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 에 관한 사항
- 3.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 정·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 한 사항
- 4.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 의하는 사항
-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 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 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

<신 설>

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수 있다.

⑤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1조의4(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·개정 시 사전 협의)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